## 예산총칙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	구	분	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총	계		6,404,133,143	192,123,994
일	반	회	계	5,927,798,652	177,833,960
특	超	회	계	476,334,491	14,290,034
_	기 타 특	별 회	계	476,334,491	14,290,034
	• 학교	용 지 부	담 금	50,685,314	1,520,559
	• 지역자원	년 시 설 세 특 i	별회계	4,900,000	147,000
	・ 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			333,128,995	9,993,870
	• 소 방 안	전 특 별	회 계	87,620,182	2,628,605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(채무부담행위사업):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(명시이월사업): "해당없음"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,477,192천원으로 하고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6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4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- (1) 공무원 기준인건비
- (2) 차입금 원리금상환
- (3)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배상금, 법정전출금
- (4) 재난대책 및 복구비